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본안 관할집중 대상 추가 등〉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55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내용	4
2. 검토의견	7
3. 관계기관 의견	9
※ 부록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범계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9. 10.
3. 회 부 일 : 2025.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특허권등 이외의 지식재산(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기술,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소송은 제외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곳으로만 운영되어 수도권 중심으로 소송이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

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4조 각 항의 순서와 표현을 법령의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에 포함되는 적극적 대상을 제24조제1항에서 먼저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할집중 대상 사건의 선택적 중복관할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3항에서 관할집중에 포함되지 않는 소극적 대상의 부가적·경합적 관할을 규정하도록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고, 각 조문의 표현을 통일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4조).

나. 민사 본안 관할집중 대상 법률을 「특허법」 등 5개 지식재산법률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기술안보 관련 3개 지식재산법률을 추가하여 총 8개 지식재산법률로 확대하고, 관할 사건을 각 호로 열거함. 또한, 현행 제24조제2항의 “전속관할”이라는 표현은 다른 관할을 일체 배제하는 경우로서 관할의 경합이 생길 여지가 없고 소송의 이송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표현을 순화함(안 제24조제1항).

다.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국적 중

복관할 법원을 기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곳에서 대전지방법원을 추가하여 두 곳으로 확대함(안 제24조제2항).

라. 현행 제24조에서는 “제2조 내지 제23조”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라는 표현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로 표현을 통일하고, 관할집중 대상이 아닌 지재권 소송의 경우에도 관할집중 법원에 부가적·경합적 관할이 인정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를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로 표현을 수정함(안 제24조제3항).

마.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법원으로 직권이송 및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이송과 관련된 제36조는 인용하는 제24조의 순서 및 표현에 따라 수정함(안 제36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본안 관할집중 대상에 반도체배치 설계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의 영업비밀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 및 같은 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²⁾에 관한 소를 추가하고, 전속관할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며(안 제24조제1항),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으로 대전지방법원을 추가하려는(안 제24조제2항) 등의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제24조(지식재산권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파. (생략)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 카. (생략)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
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
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
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
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
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야 한다. -----

-----.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디자인권

4. 상표권

5. 품종보호권

6. 반도체배치설계권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부정
경쟁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의 영업
비밀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
및 같은 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소를 제기하
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
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관한 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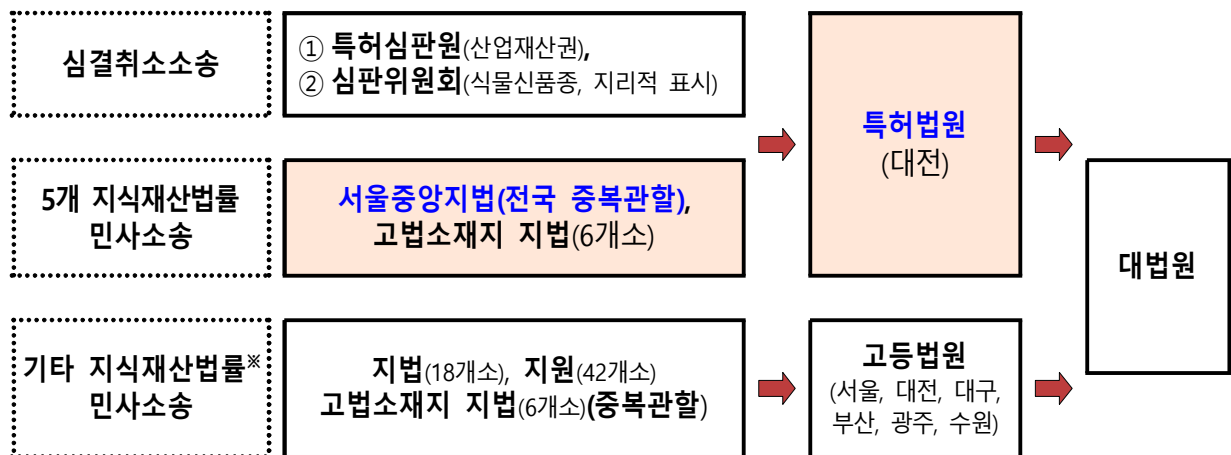
-----경우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u>지방법원에</u>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③ <u>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u>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① 법원은 <u>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u>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u>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u>지방법원에</u> <u>도</u>-----. -----.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 <u>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u>----- ----<u>제24조제1항 각 호</u>----- -----. ② -----<u>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u>----- -----<u>제3항</u>-----. -----. ③ <u>제2항</u>----- -----.
--	--

2. 검토의견

현행법(제24조)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등 5개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사사건의 제1심을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중복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지식재산소송 법원 관할집중 현황>



※ 기타 지식재산법률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저작권법 등

개정안은 위 5개 지식재산권 외에 영업비밀, 부정경쟁,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안보와 관련한 소송을 민사본안 관할집중 대상에 추가하여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판절차를 통해 기술자산을 보호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 대전지방법원도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으로 추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사법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속관할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다른 관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의 주요내용 정리>

대상법률	(현행)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추가)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관할법원	(현행) ^{1심} 서울중앙지법(중복관할) + 고법소재지 지법(6개소), ^{2심} 특허법원
	(추가) ^{1심} 서울중앙·대전지법(중복관할) + 고법소재지 지법(6개소), ^{2심} 특허법원

영업비밀·부정경쟁 등의 사건도 특허권 등과 비슷한 수준의 지식 재산 전문성이 요구되고, 실무상으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영업비밀 사건 등을 민사본안 관할집중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련 지식재산권 법리를 통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신속한 판결 및 분쟁 해결을 이룰 수 있다고 보이고,

2016년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2016~2020년간 전체 특허침해소송의 55%³⁾)되었는바, 대전지방법원의 중복관할 인정을 통해 특허법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 사건 처리의 전문성 제고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소송의 관할은 재판의 전문성·통일성 및 신속성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의 편의성과 법원의 사건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3) 정상태 외 7인, 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 특허청 정책연구보고서, 2021.5., 12~13면.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전속관할 표현을 삭제한 안 제24조제1항에 대하여 관할의 성격(중복관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별다른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이고, 관할집중 대상 확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안 제24조제1항 제7호·제8호에 따라 정해지는 소의 객관적인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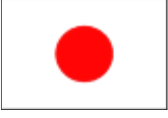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개정안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⁴⁾」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학계·법조계·산업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2년(2023. 1월~2024. 12월)간 논의 끝에 도출된 ‘산업계-법조계-정부의 합의안’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지식재산권 주요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민사 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대상이 확대되는 국제 사법 체계의 흐름에 부합하고 재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

4) 신성철 KAIST 초빙 석학교수를 위원장으로 지식재산 법·제도, 학계,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 15명과 정부위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체부, 특허청, 국조실, 법무부) 5명으로 구성.

※ 부록

<주요국의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동향>

국가	세부 내용
 [미국]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으로 관할집중 확대 ■ '82년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해 소송 항소심(2심) 및 美무역위원회(ITC)의 지재권처분 불복 전속관할 ■ '96년부터 연방법원이 경제스파이법(EEA) 형사제재, '16년부터는 영업비밀 보호법(DTSA) 민사소송 및 형사제재도 전속관할
 [유럽연합]	EU전역에 특허침해 민사소송 및 민사가처분·가압류소송 관할집중 도입 ■ '23.6월 개원한 유럽통합특허법원은 특허침해소송, 특허 무효·취소 소송 등 뿐만 아니라, 가처분·가압류 등 잠정적 보호조치도 관할집중 도입 ※ 포르투갈('11), 영국('10~'15), 스페인('17) 등도 관할집중 도입
 [일본]	기술형 사건 뿐 아니라 부정경쟁·저작권 등 비기술형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 ■ (1심 관할집중) '96년에 기술형(특허, 실용, 회로배치설계 등) 및 비기술형(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등) 사건 도쿄·오사카지방법원 중복관할 → '04년 기술형 사건에 한하여 도쿄·오사카 전속관할 인정 ■ (2심 관할집중) '05년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기술형 사건에 대한 2심의 경우 지적재산고등재판소로 전속관할 시행
 [중국]	특허·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반도체배치설계 등에 민사·행정소송 관할집중 ■ 특허, 신제품, 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회로배치설계 등 1심은 3개 지식재산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2심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관할 집중('14) → 지식재산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모두 관할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